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85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이상식・이병진・부승찬

김현정 • 손명수 • 민병덕

조계원 · 모경종 · 이언주

이소영 · 김문수 · 양부남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하여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형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서버 작동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끊기면서 관련 인터넷 포털 서비스 대부분에 접속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피해가 상당하였음.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데이터센터 시설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포함시켜 소방 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화재예방을 보다 강화하 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제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의 안전관리) ① 소방청장은	의 안전관리) ①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방			
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			
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			
리를 하여야 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u><신 설></u>	13의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